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발표순서



국민권익위원회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금지
- ◆ 금품등수수 금지
- ◆ 위반행위 신고·처리
- ◆ 신고자 보호·보상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57.8%

###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인식의 차이’  
54.4%p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社会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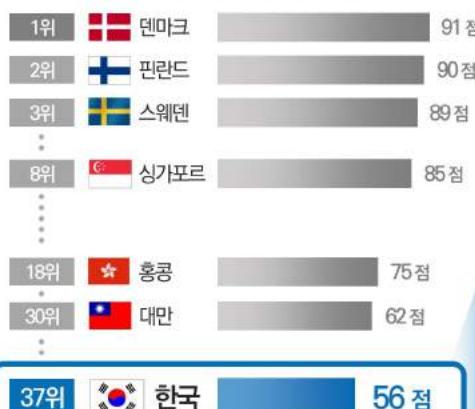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출처: 국제투명성 기구(PI, '16.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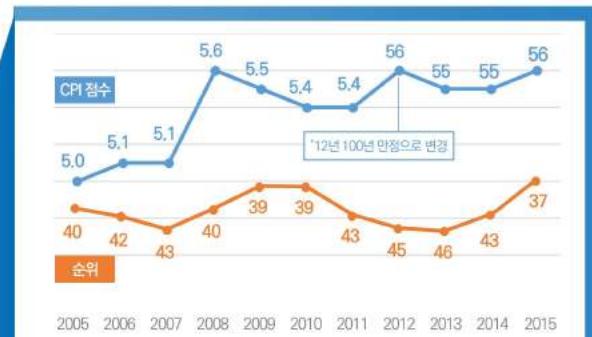


37위



한국

5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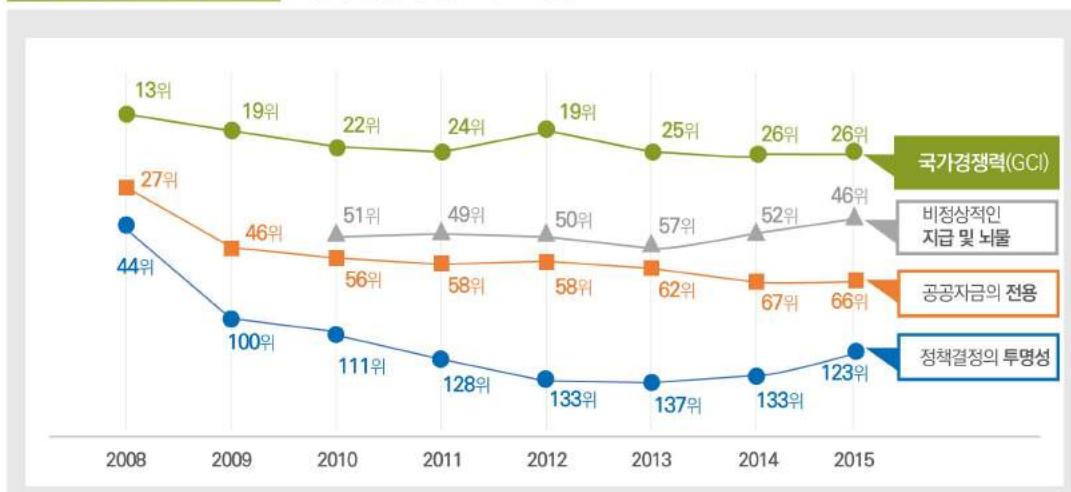


##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2015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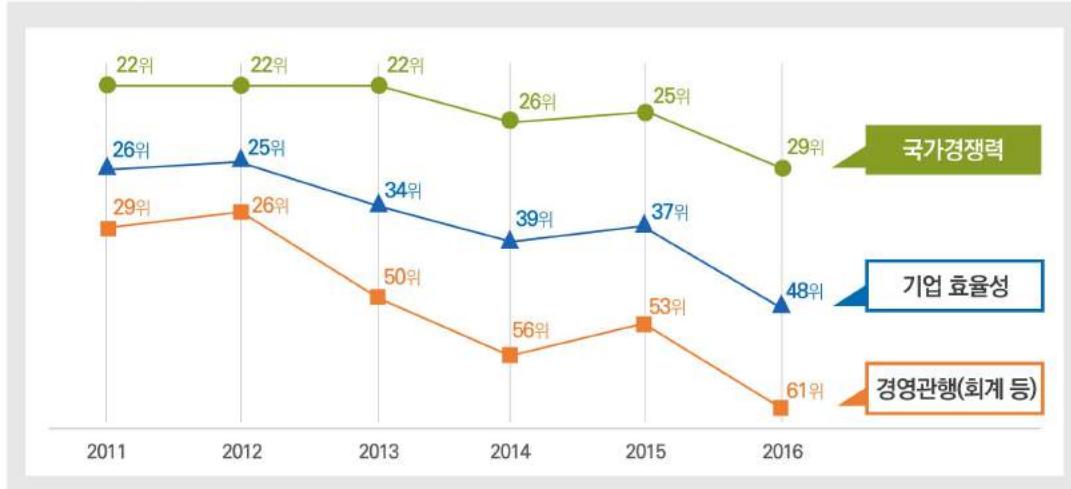
※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1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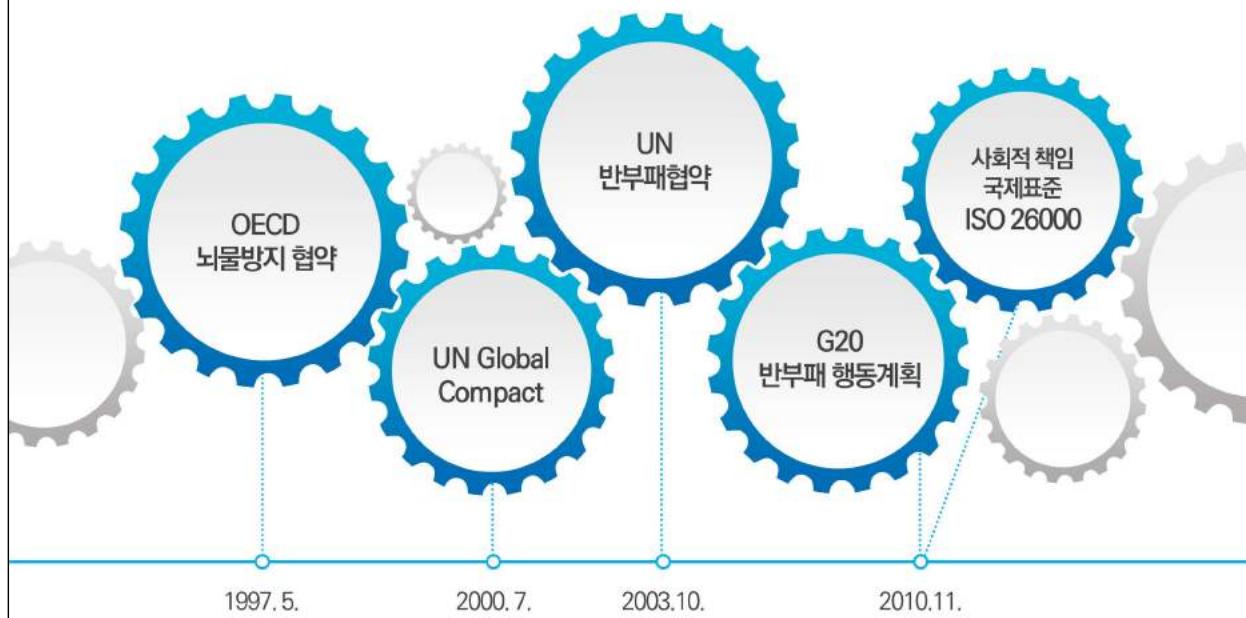
##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

2016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 출처 :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16.5월 )



##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 ●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 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 법률 적용대상

### ● 적용 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 적용 대상자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 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1. 질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질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15. 지원·권한 남용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원·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예외사유 자세히 보기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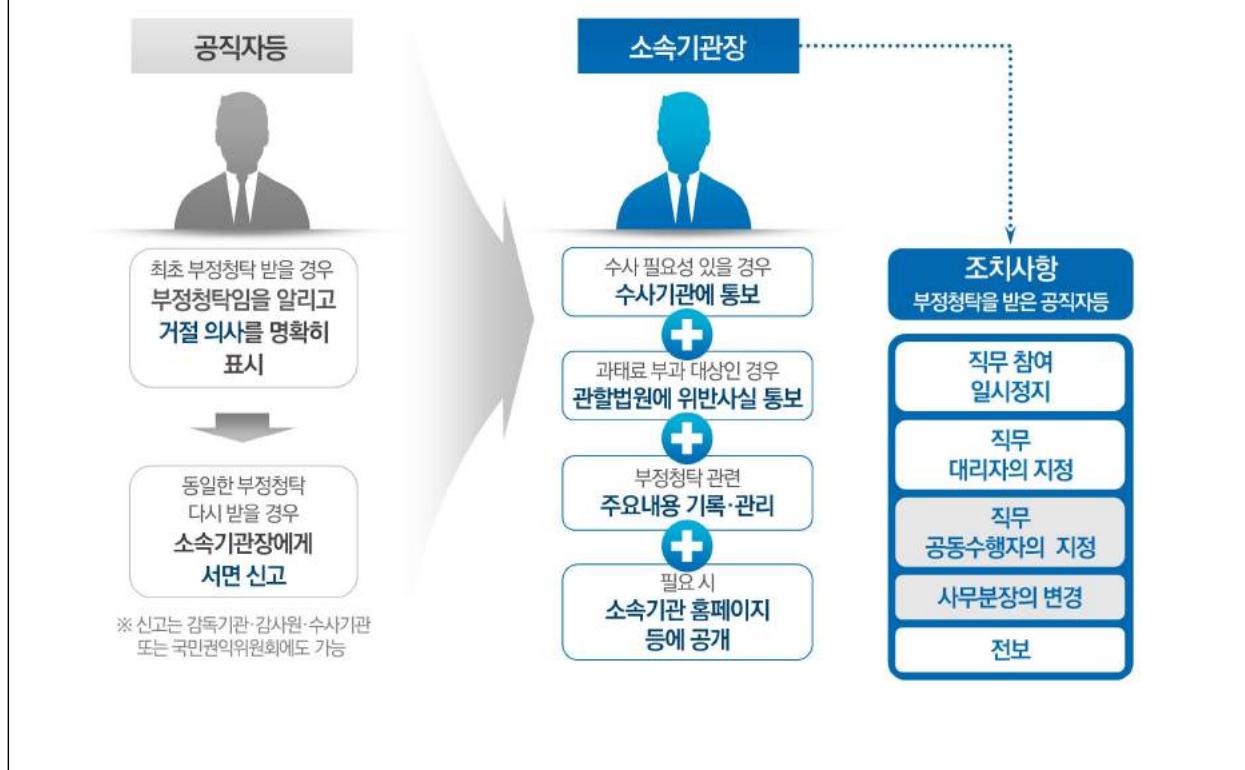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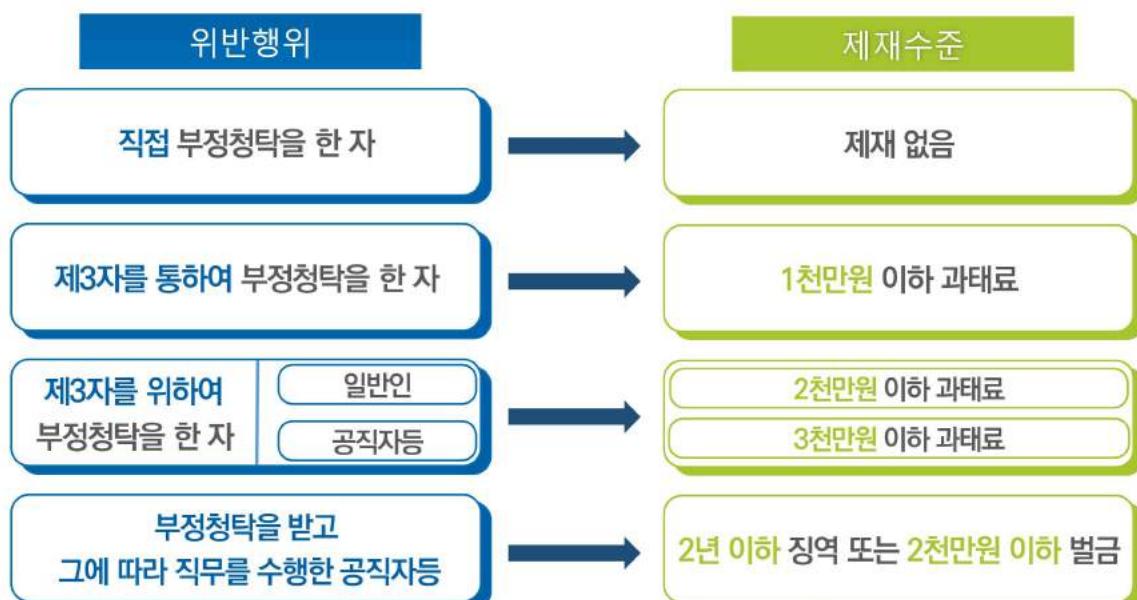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 부정청탁의 금지

### 위반시 제재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위반행위가 공직자 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별도 징계 범위)



## 부정청탁의 금지

### 사례 1

####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 토지소유자 A

■ 군청 담당공무원 C

형질변경허가신청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별처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의 금지

### 사례 2

####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 토지소유자 A

▲ 친구 B

▲ 지방세 담당공무원 D

■ 군청 담당공무원 C

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내 친구 형질변경허가 날 수  
있게 힘 좀 써 줘!

A의 허가 신청건  
잘 좀 처리 해 주게.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토지소유자 A

친구 B

지방세 담당공무원 D

군청 담당공무원 C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별처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청탁의 금지

### 사례 3

####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건설회사(주)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기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 적용기준

●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등

#### ‘금품등’의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사유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자체 없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공직자등이 **자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사전신고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자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1

#### 회계연도 관련 사례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



##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2

#### 1회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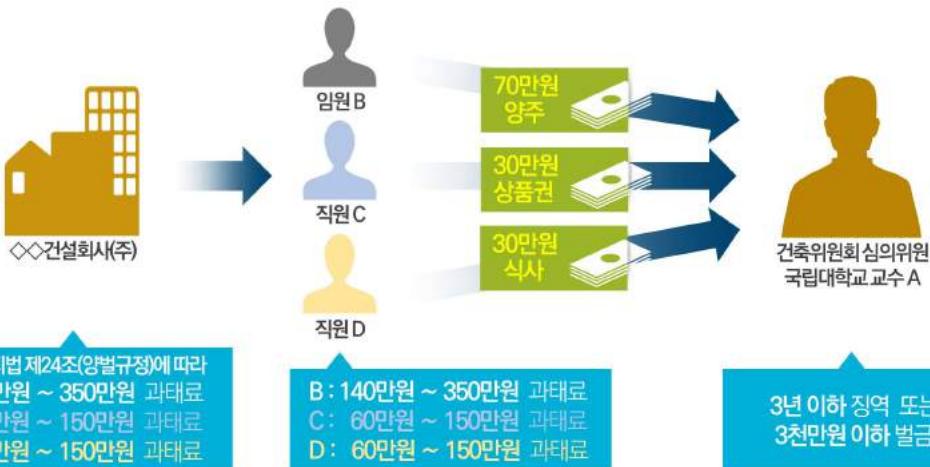


##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3

#### 동일인 관련 사례

○○도 건축위원회에 ◇◇건설회사(주)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건설회사(주) 소속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소속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속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각각 제공 또는 접대를 한 경우



##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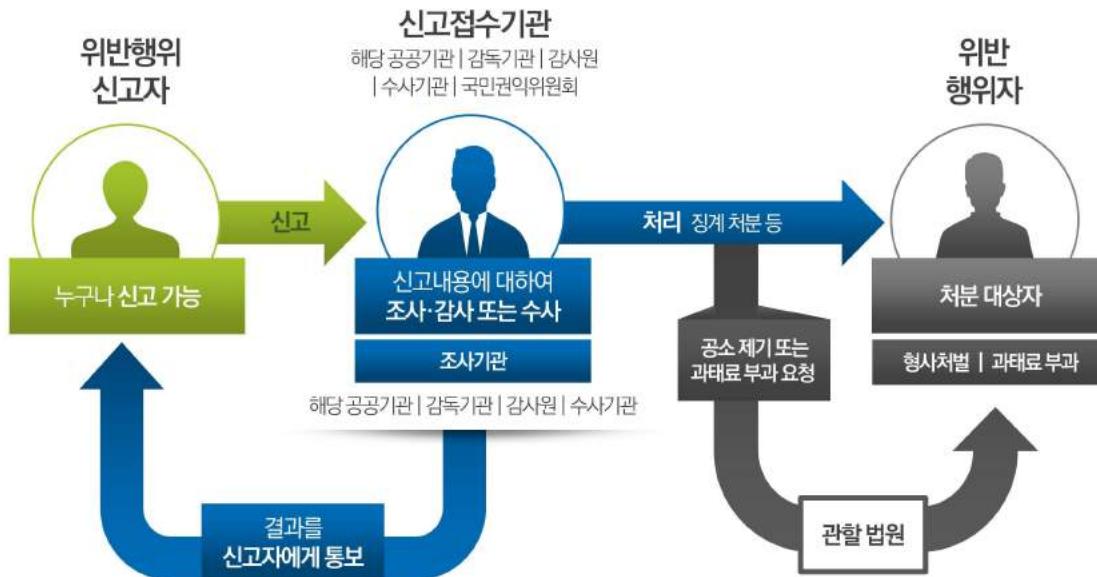
####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

○○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 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 위반행위 신고·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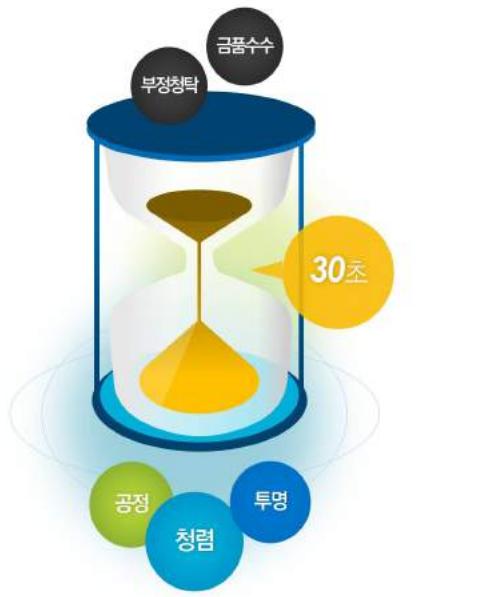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누구도  
부정청탁·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받기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기업을 위한 청탁금지법 A to Z



2016. 9. 23.

KIM & CHANG



# 목차

- 1.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2.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 예고**
-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KIM & CHANG



##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KIM & CH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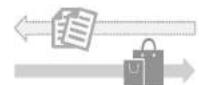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 9. 28.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



공직자등 범위 확대



직무관련성/대가성 무관



부정한 청탁 금지



양벌규정

4 | KIM & CHANG

## 공직자등 범위 확대

이슈	주요내용
매우 폭넓은 개념의 “공직자등”	<p>공공기관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국가인권위,</li><li>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li><li>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li><li>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li></ul> <p>공직자등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li><li>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li><li>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li></ul> <p>Cf. 공무수행사인</p>
	<p style="text-align: right;">5   KIM &amp; CHANG</p>

## 금품 등 수수 금지

이슈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구성요건 및 처벌의 구조
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제공자 및 수령자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ul style="list-style-type: none"><li>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i></ul></li><li>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 부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li></ul></li></ul>
<p><b>제8조 제1항</b></p> <p>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8조 제2항</b></p> <p>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p>	

## 금품 등 수수 금지

이슈	주요내용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함</li><li>신고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위 금품 등 수수의 형사처벌/과태료 구분 유형에 준하여 해당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li></ul>

### 제9조 제1항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7 | KIM & CHANG

## 금품 등 수수 금지

###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호 (포괄조항)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제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제10조 제1항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의 인정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함

8 | KIM & CHANG

## 부정청탁 금지

### 이슈

####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형사 처벌
  - 부정청탁의 15개 유형 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처벌규정 없음

→ 금품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 성립

9 | KIM & CHANG

## 부정청탁 금지

### 부정한 청탁의 종류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호 (포괄조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1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제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5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제14호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포괄조항으로 인하여 부정 청탁의 범위가 광범위

10 | KIM & CHANG

## 부정청탁 금지

### 부정한 청탁의 예외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제2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제3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제6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제7호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한 청탁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음

11 | KIM & CHANG

## 위반행위의 신고 및 부당이득 환수

### 이슈

### 주요내용

#### 위반행위의 신고

("whistle blowing")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신고에 대한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 부당이득 환수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금품 등을 받고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함

12 | KIM & CHANG

## 양벌규정 – 기업의 책임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따라서, Compliance가 중요

13 | KIM & CHANG

##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KIM & CHANG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가액기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

상한액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15 | KIM & CHANG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 가액기준

#### 산정방법

- 경조사비의 개념에는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이 포함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10만원** 이내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 이내

16 | KIM & CHANG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 제1항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사례금은 허용
- 공직자등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례금 상한액 제시



17 | KIM & CHANG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 인사혁신처 고시 공직유관단체 및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구분	장관급이상	차관급(기관장)	4급이상(임원)	5급이하(그 외 직원)
상한액 (만원)	50	40	30	20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의 경우

- 1시간당 100만원,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
- 공무와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수탁 받아 강의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8 | KIM & CHANG

##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 원안대로 시행 예정

2016. 7. 28.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전부 “합헌” 결정

- 언론사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됨
-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청탁금지법은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부 금액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은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연하게 규율 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조항의 위헌 여부
  - 배우자를 통하여 사립학교 관계자 및 언론인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

19 | KIM & CHANG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KIM & CHANG

## 시사점

1

청탁금지법상 규제는 엄격하나, 법 집행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우려  
→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움

2

내부고발자,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 음해성 투서 예상  
→ 기업활동 위축 우려

3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대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21 | KIM & CHANG

## 법인과 경영진의 면책을 위한 요건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가 중요

판례상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다음 4가지 사실관계가 고려됨

- ✓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사전적)
- ✓ 직원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는지 여부 (사전적)
- ✓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사후적)
- ✓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법인의 대응 (사후적)

관련 규정 등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22 | KIM & CHANG

# Compliance 체계 구축을 통한 면책

## 예방, 감독, 감지 및 위험의 최소화

### 위험 분석 및 예방

- 국내 compliance 환경에서 중요 위험 요소 분석
- 체크리스트 및 모의 감사 활용
- 사규, SOP 정비, 정기적인 compliance 교육 실시

### 내부고발 관리

- 핫라인의 설치
- 내부고발시 대응 요령 및 절차 구축

### 내부조사 및 시정조치

- 잠재적인 부정행위 보고시 그에 적합한 내부조사 실시
- 시정 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



Compliance 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23 | KIM & CHANG

# 감사합니다

홍준호

junho.hong@kimchang.com

02-3703-4605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제로 하는 법률의견이나 자문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는 저희 사무소에게 있으므로 저희 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 복제, 활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사무소 또는 발표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IM & CH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el: 02) 3703-1114 Fax: 02) 737-9091 / 9092 E-mail: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